2020 장공련 004호

2020년 2월 21일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산하 회원사 여러분께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기술위원장 시마야 요시카즈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SPF 측정법 기준에 대하여**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서는 2011년 10월 5일자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SPF 측정법 기준의 개정에 대해” (23 장공련 제12호)를 자율기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이 자율기준에 도입된 ISO24444 (2010)에 대해 2019년 12월에 ISO24444 (2019)로서 제2판이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추후 SPF 측정을 할 경우에는 ISO24444 (2019)에 따라 측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SO24444 (2010)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래

**“ISO24444(2010)”와 “ISO24444(2019)”의 주요 변경 사항**

(1) 최소 홍반량(MED) 기준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MED 판정 시 홍반에 대해 “자외선 조사 부위의 대부분에서 경계가 뚜렷한 희미한 홍반”에서 “자외선 조사 부위의 50% 이상에서 경계가 뚜렷한 희미한 홍반”으로 개정되었다.

(2) 피험자 선정 시 피츠패트릭의 피부타입 분류가 폐지되고, ITA°에 의한 선택만 이루어지며, 피험자의 평균 ITA° 범위 규정이나 일정 범위의 ITA°에 피험자를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추가되었다.

(3) SPF 25 이상의 제품을 위해 새롭게 3개의 표준 시료(P5: 30.6, P6: 43.0, P8: 63.1)가 추가되었다.

(4) 시료의 도포 방법에 대해 제형별로 상세히 기술되었다.

(5) 광원 빔의 균일성에 대해, UV 감응성 필름 또는 UV 센서를 이용하여 태양열 시뮬레이터의 종류별로 확인 방법이 정의되었고, 균일성 90% 이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

(6) 홍반 반응을 등급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홍반 반응의 사진 예가 부록에 추가되었다.

(7) 모든 조사 부위에 홍반 반응이 나타난 경우, 홍반 반응에 조사량 의존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등 데이터 기각의 판정 기준이 사례별로 보다 상세히 기술되었다.

이상